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67

발의연월일: 2022. 4. 14.

발 의 자:민형배·강득구·박상혁

박성준・소병훈・송갑석

송재호 • 윤미향 • 이정문

최기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표준거래계 약서를 제정해 보급합니다.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여부와 내용은 공정위만 결정합니다. 공정위 주도로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중심입니다. 제·개정 업종도 매년 초 결정되는 등 현장의 긴급 수요 대응에한계가 있습니다.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의2 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대규모유통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 존 등) ① ~ ⑧ (생 략) 존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 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 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표 준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을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① 공 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 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 이 되는 거래계약서(이하 "표준 거래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 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 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 및 납품업자등에 이를 사 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대규모유통업자 및 대규모유 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

자단체, 납품업자등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